

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수정조례(안)

검토보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

- 원안 : 1994년 5월 12일
- 수정안 : 1994년 6월 18일

나. 회부일자

- 원안 : 1994년 5월 16일
- 수정안 : 1994년 6월 18일

3. 수정제안 이유

- 도의회에 제출된 충청북도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(안)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된 협의조정 기능이 주어져 있어,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국제통상 관련사항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서
- 전면적 국제화, 개방화에 적극 부응하도록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 시켜 나가고자 함.

4. 주요 수정골자

- 당초 “국제화추진협의회”의 조례명을 “국제화추진위원회”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의.조정.의결권을 부여함.
- 국제교류협력에 국한된 위원회 기능을 농업, 특화사업등의 국제화 시책개발, UR, GR등 국제통상대책추진, 지방과학기술 진흥 방안등을 심의, 조정하는 기능을 보강함.
- 기 제출된 “조례(안)”의 소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변경하며,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관 또는 단체등의 실무관계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였음.
- 위원회의 기능 수행시 필요한 경우 공청회, 세미나 뿐만아니라 국제통상 및 교류협력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음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수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이는 충청북도 직제개편으로 인해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되었고
'94년 5월 12일자로 제출된 충청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(안)
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된 협의조정 기능만이 명
시되어 있는 관계로 충청북도 국제화 추진 위원회로 조례명을 변
경함과 아울러 국제통상 관련사항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것으로

국제화 촉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킴과 지방행정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·관·산·학 각 분야의 참여속에 지원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충청북도 국제화 추진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따른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

그 주요내용으로는

위원회 기능에 있어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, 농업·특화 사업등의 국제화 시책 개발, UR·GR등 국제통상대책 추진, 지역 주재 외국 기관·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,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등과 국제화에 관련한 필요 인정사항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며,

구성위원수에 있어서는

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명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에 있어서는 1년을 단위로 위촉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, 회의소집, 심의조정 사항의 처리, 공청회개최등 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내용으로서

본제정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적극 부응하도록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첨 부

충청북도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